# 석유공사, 성과보상제 본격 도입

석유공사와 노동조합은 4월14일 조합원 찬반투표 끝에 저성과자 · 무임승차자에 대한 퇴출 유도와 성과급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 도입에 합의했다.
이에 따라 2년 연속 저성과자나 무임승차자로 평가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성과관리개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본급을 삭감하고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.
기본급 삭감 폭은 1년차 관리대상자 10%, 2년차 20%, 3년차 50%로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수준이다.
또 개인성과에 따라 S-D 등급까지 성과급 차등폭을 크게 확대했다.
상위 5%인 S등급과 하위 5%인 D등급은 3급 부장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성과급 차이가 발생한다.
기존 성과급 차등 폭은 처 · 실장급 기준 최대 ±65% 수준에 그쳤다. 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연 증가하는 호봉제 임금체계도 개선하고 성과별로 기본연봉 인상률에도 차이를 두었다. 등급별로 S등급은 기본 임금인상률의 2배, D등급은 아예 인상되지 않는다.
석유공사 관계자는“ 공기업의 고질적인 연공서열 및 나눠 먹기식 보수체계의 틀을 깨고 핵심성과지표와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를 통해 민간기업형 성과보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 ”이라고 설명했다.

<화학저널 2010/4/26>